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4. 2

교통지도과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 번호	제 목	감 사 지 적 사 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 치 결 과	비고
행정 -29	과태료 관리미흡	<input type="checkbox"/> 세외수입 과태료 관리미흡 1. 운전자과태료 - 부과 : 61,050,000원 - 징수 : 9,450,000원 - 체납 : 51,600,000원 - 징수율 : 15.48% 2.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 부과 : 861,230,000원 - 징수 : 416,170,000원 - 체납 : 445,060,000원 - 징수율 : 48.32%	1. 조정건수가 매우 많아 채권압류가 어려우나 차 량 및 부동산 에 대해 채권 확보를 해야 할 것이며 2. 일체 징수에 최선을 다해 야 할 것임	교통지도과	<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 : 지속적인 차량압류 및 독촉장발 송 으로 징수율 제고 (완료) ○ 운전자 과태료 조치결과 - 체납액 : 51,600,000원 - 자동차압류 및 압류통보 : 34,572,000원 - 압류율 : 67% - 체납자 독촉장 발송 : 51,600,000원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조치결과 - 체납액 : 445,060,000원 - 자동차압류 및 압류통보 : 391,652,800원 - 압류율 : 88% - 체납자 독촉장 발송 : 445,060,000원	조치완료

1080

처리 번호	제 목	감 사 지 적 사 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 치 결 과	비고
사 회 건 설 -21	불법주차 단속관련 대장관리 철저	일일단속활동복명서, 주차위반 대장, 불법주차단속실적 등 이 상3건의 관련서류가 서로 일 치하지 않음	일일단속활동복 명서, 주차위반 대장, 불법주차 단속 실적 등 이상 3건의 관 련서류가 직원 교육 등을 통하 여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교통지도과	-일일단속활동복명서, 주차위반대장, 불법주차 단속실적 등 일건서류가 일치하도록 매일 점검하고 있음	조치완료

처리 번호	제 목	감 사 지 적 사 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 치 결 과	비고
사 회 건 설 -12	주차단속 요원수당 현실화	현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요 원은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동사무소 직원은 15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교통지도과 단속요원도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조치바람	교통지도과 주 차 단 속 요 원 도 15만원의 수당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 람	교통지도과	-2004년도 예산심의시 주차단속원의 수당이 5만원으로 삭감되었음. 이에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수당현실화에 노력할것임	조치중

처리 번호	제 목	감 사 지 적 사 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 치 결 과	비고
사 회 건 설 -35	복명서 작성철저	주차단속원 일일활동복명서(특별단속포함)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실제근무 활동을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책임감 약화가 우려됨	일일단속활동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단속시간, 단속지역 및 실적 누계 등을 실제 사실을 근거로 명확하게 작성토록 할 것	교통지도과	-일일단속활동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단속시간, 단속지역, 실적누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음	조치완료

처리 번호	제 목	감 사 지 적 사 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 치 결 과	비고
사 회 건 설 -7	마을버스 운영관리 철저	대상운수 마을버스가 2003년 11월 25일 영등포구 도림고가길 노상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마을버스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필요	빈번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록이후 실제 차고지 이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 조치 할 것	교통지도과	- 2월25일 13:30 운송사업자 교육 실시 예정	조치중

처리 번호	제 목	감 사 지 적 사 항	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부서	조 치 결 과	비고
사회 건설 -19	방치차량 처리지연 개선건의	현재는 방치차량을 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데 처리 지연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현장확인 후 불 법주차와 같이 즉시 강제 견인 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 하면서 법적인 처리 절차를 진 행함으로써 방 치차량의 처리 지연에 따른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후 현장확인, 예고(10일), 자진처리 명령(20일), 이행여부확인(1일) 강제처리통보 및 공고(7일이상), 폐차, 직권말소까지 약 40일 소요됨. - 교통흐름을 저해 하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 될 경우 폐차장에 사전 견인처리하여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시키고 있음 	조치완료